

예금 · 보호

상속예금 통합지급은 왜 소액부터 시작하나

지급이 면책되지 않으면 은행은 다른 상속인에게 다시 지급하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의 협약 원문과 민법의 상속·채권 조문을 대조해 통합지급의 범위, 은행의 이중지급 위험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절차를 구분했습니다.

발행

2026.08.19

연번

2026_40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이번 협약의 핵심이 서류 간소화가 아니라 은행이 지는 이중지급 위험의 크기를 제한한 데 있다고 본다. 소액 구간을 벗어나거나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으면 종전 절차가 그대로 적용된다. 유족이 자기 사안이 어느 쪽인지 신청 전에 확인할 방법은 아직 안내되지 않았다.

확정된 사실

국민권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6년 6월 18일 상속 금융재산 통합조회에 지급 기능을 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은 최종 시행 공고가 아닙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협약일	2026년 6월 18일	국민권익위·금융감독원
신청 방식	금융회사 한 곳	대표 상속인 계좌로 일괄 이체
초기 대상	은행권 소액예금	보험금·증권 등은 단계적 검토
예시 금액	500만원	고정 기준이 아닌 발표자료 예시
기준 간소화	100만원→300만원	은행권 소액 상속예금
시행일	아직 미공개	세부 절차 마련 중

발표자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조회한 뒤 금융회사마다 방문하던 절차를 한 곳의 신청으로 줄이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대표 상속인에게 일괄 이체하는 구상이며 초기에는 은행권 소액예금부터 시작합니다.

500만원은 제도의 확정 한도가 아니라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한도를 상속인별로 계산하는지, 피상속인·금융회사·계좌별로 계산하는지도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공동상속 재산은 공유가 됩니다. 예금 반환청구권처럼 나눌 수 있는 채권도 공동상속인 사이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이 대표 상속인 한 명에게 전액을 지급했는데 그 사람이 적법한 수령권자가 아니라면 다른 상속인이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려면 선의이고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은행은 상속관계와 동의를 확인하려 합니다.

통합지급은 이 확인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표준화하는 제도입니다. 소액부터 시작하면 잘못 지급했을 때 은행이 다시 지급해야 할 최대 노출을 제한하면서 절차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직접 영향을 받는 사람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진 소액예금을 정리해야 하는 공동상속인입니다. 통합조회 결과는 3개월 동안 확인할 수 있지만 조회와 지급 신청은 별도 단계입니다.

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거나 금액이 적용 범위를 넘으면 종전처럼 금융회사별 서류와 동의 절차가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 상속인 지정이 지급 결과를 곧 상속분 확정으로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신청할 수 있고 금융재산 외에도 세금·토지·자동차 등 여러 재산을 조회합니다. 지급 서비스의 범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시행 시점 협약 이후 시스템 구축과 세부 기준 마련 일정은 공개됐지만 실제 접수 개시일은 아직 공고되지 않았습니다.	02 대표 상속인 지정 누가 어떤 방식으로 대표 상속인을 지정하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세부 절차가 필요합니다.
03 이견 처리 일부 상속인이 지급에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을 때 통합지급을 중단하는 기준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04 소액 기준의 단위 500만원 예시를 피상속인·금융회사·계좌 가운데 어느 단위에 적용할지 최종 기준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

- 국민
- 안심상속 또는 금융재산 조회 결과에서 금융회사·계좌·잔액을 먼저 확인하고 3개월의 조회 가능 기간을 기록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 전원의 연락처·의사, 대표 상속인과 지급 계좌를 미리 정리합니다.
 - 500만원을 확정 한도로 보지 말고 시행 공고에서 적용 단위와 제외 사유를 다시 확인합니다.

- 대상회사
- 신청 전 화면에서 대상 금액, 대표 상속인 지정 방식, 이견·연락두절 때의 처리 절차를 표시합니다.
 - 통합지급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안은 기존 절차와 필요서류를 한 번에 안내합니다.

- 당국
- 시행일·한도 단위·대표 상속인 동의방식을 표준 안내서와 신청 화면에 동일하게 공개합니다.
 - 오지급·이중지급과 상속인 이견이 발생했을 때의 정정·환수 절차를 마련합니다.

· 시행일, 소액 기준의 계산 단위와 공동상속인 동의 절차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A

표준 절차로 시행

B

예외가 넓게 남음

·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시행 공고에서 접수 개시일, 금액 단위와 동의서 양식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제도 예금자보호제도

금융상품 보통예금

금융상품 정기예금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확인한 사실·숫자 6건

6 확인 항목	6 1차 자료	0 파생 계산	시행 공고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 01

1차

상속 금융재산 통합조회·지급 서비스 도입 업무협약
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 2026년 6월 18일 발표

원문 열기 ↗
- 02

1차

금융회사 한 곳 신청과 대표 상속인 계좌 일괄 이체, 500만원 예시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발표

원문 열기 ↗
- 03

1차

은행권 소액 상속예금 절차 간소화 기준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금융감독원 2024년 발표

원문 열기 ↗
- 04

1차

상속인은 상속개시 때 피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민법 제1005조

원문 열기 ↗
- 05

1차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
민법 제1007조

원문 열기 ↗
- 06

1차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는 선의이며 과실이 없을 때 효력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금융감독원·은행연합회의 시행 공고에서 개시일, 소액 기준 단위, 참여 금융회사와 공동상속인 동의 절차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공개 연번을 실제 게시 순서에 맞춰 NB-2026-040으로 바로잡고, 협약 단계와 실제 시행을 구분해 게시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과 견해이며 관계기관이나 금융회사의 공식 입장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실제 상속재산 분할과 지급 권한은 개별 사실관계·서류·최종 시행기준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